

기반시설부담금 축사제외 방침 확정, 2월말부터 시행예정

-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

지난 2월 13일(화)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 1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포함)에 대해서도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개방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농축산업의 위축을 초래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 등 행정절차를 감안, 2월말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용 면세유 혜택 영구화 촉구

지난 2월 8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 혜택을 영구화 해야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어업용 유류 면세와 관련한 현행 조세특례법에 의하면 올 6월 말까지 면세시한이며, 이후 12월 까지는 75%만이 면세가 가능하고 '08년부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홍 의원은 “어려운 농어촌실정을 감안하여 농어민들에 게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선박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기계·어업용 선박 등 농림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 기한을 영구적 면제 규정으로 전환하고 시행일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분 또는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의 시행시 향후 3년간 유류세와 부가가치세의 감면액 규모는 약 6조 2,623 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본 법안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본 개정안에는 강기갑(민노당·비례대표), 김춘진(열린우리당·전북 고창, 부안) 등 19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